

2002년분 소득세 산출법 달라진다

영수증 꼭 받고 장부 기장해야 세금 적게 내

2003년 5월에 신고하는 2002년도분 소득세부터 '기준 경비율'이 적용돼 소득세의 '소득 금액'을 산출하는 방법이 달라진다. 또 무기장사업자(장부를 기장하지 않는 사업자)라도 간편 장부 등 장부를 기장해야 산출 세액 10%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물지 않게 된다.

자료 제공 /오청윤 국세청 납부홍보과

'무기장사업자(장부를 기장하지 않는 사업자)'는 그동안 소득세 신고시 수입 금액(매출 금액)에 해당 업종의 표준소득률을 곱한 '소득 금액'으로, 기장사업자(장부를 기장해야 하는 사업자)는 수입 금액에서 필요 경비를 뺀 '소득 금액'으로 계산해 소득세를 내왔다.

그런데 2003년부터 기존의 표준소득률 대신 '기준경비율'이 적용된다. 소득세는 해당 연도의 세금을 다음해 5월에 신고하는 것이다. 따라서 무기장사업자(장부를 기장하지 않는 사업자)의 경우에 내년 5월에 신고하는 소득세분에 해당하는 올해 1월부터 12월까지의 물품 매입비, 인건비, 임차료 등 주요 경비의 증빙 서류를 빠뜨리지 않고 갖추어야 세금을 적게 낸다. 또 무기장사업자도 간편 장부 등 장부를 기재해야 산출 세액 10%에 해당하는 '무시장 가산세'를 물지 않게 된다.

기준경비율 제도란?

장부를 기장하지 않는 사업자도 기장사업자와 같이 수입 금액(매출 금액)에서 필요 경비를 공제해 소득 금액을 계산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기본적인 비용인 주요 경비(물품 매입 비용, 임차료, 인건비)는 증빙 서류에 의해 인정하고, 나머지 경비는 정부가 업종별로 정한 기준 경비율에 의해 필요 경비를 인정한다.

▲ 기준경비율 적용자

$$\text{소득금액} = \text{수입금액} - (\text{수입금액} \times \text{기준경비율})$$

- (수입금액 × 기준경비율)

*제과점 등 해당 업종의 기준 경비율은 내년 3월경 확정될 예정임.

▲ 단순경비율 적용자

$$\text{소득금액} = \text{수입금액} - (\text{수입금액} \times \text{단순경비율})$$

* 단순경비율은 내년 3월경 확정 예정임.

기준 경비율은 올해 사업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신고하는 내년 5월부터 적용되는데 해당 업종별 기준 경비율의 세율은 내년 3월쯤 확정될 예정이다. 올해 5월에 신고하는 2001년분 소득세는 기준대로 표준 소득률을 곱해 계산한 소득금액을 신고하면 된다.

연 매출이 4,800만원 이하의 소규모 사업자는 '기준 경비율' 대신 표준 소득률과 비슷한 '단순 경비율'에 의해 소득 금액을 계산한다.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는?

장부를 기장하지 않는 사업자로서 직전 연도 수입 금액이 표에서 나타난 금액 이상인 경우는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가 된다. 직전 연도 수입 금액이 표에서 나타난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와 당해 연도 신규 사업자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한다.

제과점은 표에서 두번째란의 '음식점업'에 해당한다. 표에서 나타나듯 해가 갈수록 수입 금액(매출 금액)이 낮아져 많은 업종이 기준 경비율 적용 대상자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업종구분	연도별 2002년 ~ 2003년 귀속	2004년 ~ 2005년 귀속		2006년 귀속
		2002년 ~ 2003년 귀속	2004년 ~ 2005년 귀속	
농업, 임업, 어업, 광업,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 및 아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	1억 5,000만원 이상	9,000만원 이상	7,200만원 이상	
제조업, 숙박·음식점업,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건설업, 운수·창고업, 통신업, 금융·보험업	9,000만원 이상	6,000만원 이상	4,800만원 이상	
부동산임대업, 사업서비스업·교육서비스업· 보건 서비스 및 사회 복지사업 등 서비스업	6,000만원 이상	4,800만원 이상	3,600만원 이상	

주요경비의 범위와 증빙서류의 종류

주요경비의 범위

매입비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화(사업용고정자산 제외)의 매입과 외주 기공비 및 운송업의 운반비 '재화의 매입'은 상품·제품·제과 재료·소모품 등과 동력·열 등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의 매입으로 함. '운송업의 운송비'는 운송업과 운송관련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타인의 운송수단을 이용하고 그 대가로 지출하는 금액 음식료, 보험료, 수리비 등 용역(서비스)을 제공받은 금액은 매입비용에서 제외됨
임차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 기계장치 등 사업용 고정자산의 임차료
인건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종업원의 급여·임금 및 일용근로자의 임금과 실제 지급한 퇴직금으로 함

증빙서류의 종류

- 매입 비용과 임차료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정규 증빙서류를 수취해야 하며, 간이세금계산서나 일반 영수증을 수취한 금액은 「주요경비 지출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해 정규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는 영수증 등을 수취하여 보관하면 됨).
- 인건비는 원천징수영수증·지급 조서 또는 지급 관련 증빙 서류를 비치 보관하여야 한다

기준경비율제도의 적용시기는?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자(기준 경비율 적용 대상자)에 대해 모두 장부를 기장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표준소득률을 폐지하고 2002.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기준 경비율제도를 시행한다. 즉 2002년도에 장부를 기장하지 않는 사업자는 2003년 5월에 신고하는 2002년 귀속 소득세부터 기준 경비율 또는 단순 경비율에 의해 소득 금액을 계산하여 신고해야 한다. 단, 2002년 5월에 신고하는 2001년 귀속 소득세까지는 표준소득률로 신고할 수 있다.

사업자가 유의할 사항

장부를 기장하는 사업자는 기준경비율제도가 시행돼도 아무런 관계가 없다. 그러나 장부를 기장하지 않고 기준경비율로 소득세를 추계 신고하면 무기장가산세 (10%, 복식부기의무자는 20%)가 부과되는 등 불이익이 따르므로 2002년부터는 장부를 기장하는 것이 유리하다

※ 부득이한 사유로 장부를 기장하지 못하여 기준경비율로 소득세를 신고하는 경우에도

주요 경비(매입 비용, 임차료, 인건비)의 증빙 서류를 빠짐없이 받으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다.

기장 신고와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세 신고 비교

구분	기장 신고에 의한 신고	기준경비율에 의한 신고
신고 방법	기장신고	주계신고
소득금액	수입금액에 기장한 비용을 공제해	수입 금액에서 실제 지출한 주요 경비(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와
계산	소득 금액을 계산	기준경비율에 의해 추계한 비용의 합계액을 공제하여 소득 금액을 계산
기장세액공제	간편장부 대상자는 기장 세액공제(산출 세액의 10%)	해당 없음
무기장 가산세	해당 없음	직전 연도 수입 금액의 합계액이 4,800만원 이상인 자는 무기장 가산세부과(산출 세액의 10%) ※복식부기의무자는 신고불성실 기산세 20% 부과
소득세 조사	비용에 대한 소득세 조사	주요 경비에 대해서는 지출 사실 확인 ※ 종전 표준소득률에 의한 추계 신고자는 비용을 밝힐 책임이 없었음